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. 2. 18 선고 2015가단253-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2. 18.

판결 선고 2016. 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9평 중 1/21 지분에 관하여 1994. 5. 2.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/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

3. 기각 부분
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.

따라서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,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.

판사조미화

별지